

의안번호	제 615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356 회)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7년 5월 31일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615
------	-----

제출연월일 : 2017. 5. 31.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시행(2017.2.4.) 및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 운영)가 삭제되어 「학교보건법 시행령」과 관련된 「충청북도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 나. 현재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의해 교육장 소속하에 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기능 ·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의해 구성되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 다.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임 · 해촉 및 지역위원회의 운영세칙」 제정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권한위임 사항 반영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도붙임
- 나. 기타
 - 1) 입법예고(2017.2.24.~2017.3.16.):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령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37호, 2017.2.4. 시행]

제5조(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
2. 시행계획
3.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4. 그 밖에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시·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시·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5. 그 밖에 지역별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시·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시·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시·도위원회 위원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해임·해촉된다.
-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⑦ 시·도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⑧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⑨ 시·도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30호, 2017.2.3. 제정]

제5조(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교육환경 보호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도위원회를 대표하고, 시·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도위원회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④ 시·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도위원회에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시·도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시·도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도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시·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시·도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시·도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시·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해촉) 교육감은 시·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시·도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시·도위원회의 회의 등) ①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시·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5조제8항 단서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 자료제출, 의견진술 또는 협조를 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도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제8항 본문에 따른 지역교육환경 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심의를 담당한다.

1. 법 제6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심의
2. 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심의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의
4. 제20조제2항에 따른 심의

제11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직원, 관련 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지역위원회가 설치되는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지역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중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지역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임·해촉)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역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중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지역위원회의 회의 등)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역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0조제1호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된 학교의 장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제2호에 따른 심의와 관련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회의의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관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지역위원회는 제10조제2호에 따른 심의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교의 장이 그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학교보건법 시행령 [삭제(2017. 2. 3.) 법령]

제7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사람의 소속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정화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은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소속 직원,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

하거나 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 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의 장을 정화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정화위원회의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정화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관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은 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를 요청받은 정화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2.8.13]

□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충청북도조례 제3545호, 2013.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7조의 4까지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7, 2013.3.29>

제2조(설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9>

제3조(기능) 정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9>

1.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 행위와 시설의 해제에 대한 사항
2. 「학교보건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화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한 사항
3.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 보호에 관하여 교육장이 의뢰하는 사항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화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사항

5. 그 밖에 정화위원회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의 임명 등) 정화위원회 위원은 교육장이 영 제7조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5조(공무원 위원의 임기) 소속 직원 및 관련기관의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금지행위와 시설에 해당하는 영업 등을 영위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정화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화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① 영 제7조의4와 별도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1. 위원이 제6조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위원이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삭제 <2013.3.29>

4. 삭제 <2013.3.29>

② 영 제7조의4제2의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해당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새로운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정화위원회 위원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개정 2013.3.29>

[제목개정 2013.3.29]

제9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0조(회의 등) ① 정화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

의를 소집한다.

② 교육장은 제3조제1호에 따라 해제심의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안건과 관련된 정화구역 관리자인 학교의 장의 정화위원회 출석 여부(학교의 장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학교의 장 의견서)

2. 민원인의 신청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사항

3. 신청지 주변에 대한 심의사례 등

③ 영 제7조에 따른 참관의 불허와 영 제7조의3에 따른 위원의 기피 여부 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영 제7조에 따라 정화위원회의 참관을 하려면 학교의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화위원회 참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참관 신청인 보안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⑤ 영 제7조에 따른 재심의는 학교의장 의견과 다르게 정화위원회에서 해제 결정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 때 학교의장은 정화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학교의장 의견과 다르게 정화위원회에서 해제 결정되었을 경우 학교의장에게 통보

2. 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교육장에게 통보

[전문개정 2013.3.29]

제11조(회의록) 정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및 대표위원의 서명

3.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

4. 위원들의 발언내용 주요 요지 등

제12조(간사와 서기) 정화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담당사무에 따라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주무자,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정화위원회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3545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